소음 · 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음 · 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을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는 별표 3의2와 같다.

제9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관광진흥법 제24조"를 "「관광진흥법」제50조"로 하며, 동항제4호중 "시·도지사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중 "시·도지사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제17조중 "소음 · 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서"를 "소음 · 진동배출

시설가동개시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시·도지사"를 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소음·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일변경신고서"를 "소음·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일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단서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제4항중 "시·도지사로부터"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로,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시장·군수·구 청장은"으로 한다.

제22조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및 제1항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제1항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5호중 "시·도지사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 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33조의 제목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법 제25조"를 "법 제25조제1항"으로, "2일 이상"을 "5일 이상"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25 조"를 "법 제25조제1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시 · 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며,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특정공사장비, 특정공사기간,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 소음· 진동저감대책, 공사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신고인은"을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특정공사기간의 연장,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 소음・진동저감대책, 공사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시 · 도지사"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5 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 ⑥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시설의 사전설치가 곤란한 경우
- 2.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 3.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설치에 따른 소음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4.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인하여 방음벽시설의 사전설치가 곤란한 경우
- 5. 천재지변·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긴급을 요하는 복구공사 의 경우
- ⑦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수립·시행하여야 할 별도의 방음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 및 건설기계의 사용
- 2. 이동식 방음벽시설 또는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 3. 소음발생행위의 분산 및 건설기계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저 감
- 4. 휴일 작업중지 및 작업시간의 조정
- 제33조의2를 제33조의3으로 하고,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3조의2(저소음건설기계의 범위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환경부

령이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 2. 법(법률 제729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9 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

제33조의3(종전의 제3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영업을"을 "영업 또는 홍보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34조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35조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6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로 한다.

제55조제2항중 "운행차검사대행자"를 "확인검사대행자"로 한다. 제71조의 제목 및 본문중 "검사대행자"를 각각 "확인검사대행자"로 한다.

제72조의 제목중 "검사대행자"를 "확인검사대행자"로 하고, 동조 각호 외의 부분중 "운행차검사대행자"를 "확인검사대행자"로. "시·도

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검사대행자등록신청서"를 "확인검사대행자등록신청서"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3조의 제목중 "검사대행자"를 "확인검사대행자"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시·도지사는 운행차검사대행자"를 "시장·군수·구청장은확인검사대행자"로, "운행차검사대행자등록증"을 "확인검사대행자등록증"을 "확인검사대행자등록증"으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시·도지사는 운행차검사대행자"를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로 하고, 동항 후단중 "운행차검사대행자"를 "확인검사대행자"로 한다.

제73조의2의 제목 및 동조제1항제1호중 "검사대행자"를 각각 "확인 검사대행자"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호"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운행차검사대행자변경등록신청서"를 "확인검사대행자변경등록신청서"로, "각호"를 "각 호"로,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확인검사대행자등록증

제74조의 제목 및 본문중 "검사대행자"를 각각 "확인검사대행자"로 한다

제79조중 "운행차검사"를 "확인검사"로 한다.

제79조의2 내지 제79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소음도검사의 신청) 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소음도검사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 에 따른 소음도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 2. 소음저감에 관한 서류
- 제79조의3(소음도검사성적서의 교부 등) ①소음도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음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소음도검사성적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 ②소음도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음 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소음도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79조의4(소음도검사방법) ①법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음도의 측정환경: 측정장소는 소음도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고, 측정대상기계에 따라 측정장소 지표면의 종류를 달리하여야 하는 등 정확한 소음측정이 보장되는 환경일 것
 - 2. 소음도의 측정조건 : 소음측정이 풍속 및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측정대상기계가 가동상태일 것

- 3. 소음도의 측정기기 등 : 소음도의 측정기기는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규격을 사용할 것
- 4. 측정자료의 분석·평가: 배경소음·환경 보정치를 고려하는 등 측정자료의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2대 이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가장 높은 기계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
- 5. 기계별 가동조건: 기계의 엔진 자체 소음 및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음을 측정하여야 할 것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검사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79조의5(소음도표지) 법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표 지에 관한 사항은 별표 22의2와 같다.
- 제79조의6(소음도검사수수료) 법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검사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산정기준에 따라 소음도검사기관의 장이 인건비·장비의 사용비용·재료비 등 제반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 제79조의7(소음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음도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별지 제42호서식의 소음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인등기부등본
- 2.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3. 검사장,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79조의8(소음도검사기관의 지정서 교부) 환경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소음도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79조의9(소음도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49조의3제4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이라 함은 별표 22의3과 같다.

제80조의 제목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3조제1항 및 제3항중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 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 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환경기술인과정
- 2. 방지시설기술요원과정
- 3. 측정기술요워과정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법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표지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 3의3. 법 제49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검사기관의 준수 사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8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45조제1항 별표 3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2006년 1월 1일부터 제작되는 자동차

종	류	정 의	모
경기	사동차	주로 적은 수의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엔진배기량 800cc 미만
		적합하게 제작된 것	

승 용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	소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9인승
자동차		형	이하
^r&^r 	적합하게 제작된 것	중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10인승 이
		형	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이하
		중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10인승 이
		대	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초과 3.5톤
		형	이하
		대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10인승 이
		형	상 및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 물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	소	엔진배기량 800cc이상 및 차량 총
자동차	적합하게 제작된 것	형	중량 2톤 이하
71071		중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
		형	중량 2톤 초과 3.5톤 이하
		대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
		형	중량 3.5톤 초과
이 륜	주로 1인 또는 2인 정	 제 :	진배기량 50cc 이상 및 공차중량 0.5
자동차	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_	
	적합하게 제작된 것	논	미만

- 비고: 1. 승용자동차에는 지프(JEEP) · 웨곤(WAGON) 및 승합차를 포함한다.
 - 2. 화물자동차에는 밴(VAN)을 포함한다.
 - 3. 화물자동차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4. 이륜자동차에는 옆 차붙이 이륜자동차 및 이륜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최고속도 50km/h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며, 공차중량이 0.5톤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5. 전기를 주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종류의 구분은 위표 중 규모란의 차량총중량에 의하되, 차량총중량이 1.5톤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자동차로 구분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중 "사업장의 명칭을"을 "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로 하고, 동표 제4호중 "배출시설을"을 "배출시설의 전부를"로 한다. 별표 7의 제목, 환경관리인자격기준란 및 비고란의 제2호 내지 제4호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하고, 동 비고란의 제2호 "기계분야기사·전기분야기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를 "기계분야기사·전기분야기사"로 한다.

별표 7의2 제1호가목 비고란의 제2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 비고란의 제4호중 "1회 2분 이내"를 "1회 3분 이내로 하여야 하고"로 하며, 동 비고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 한하여 -5dB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 법」에 따른 학교 및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른 공공도서 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별표 7의2 제1호나목 비고란의 제2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 비고란의 제4호중 "1회 2분 이내"를 각각 "1회 3분 이내로 하여야 하고"로 하 며, 동 비고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 한하여 -5dB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가. 주거지역
 -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른 공공도서 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별표 8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표 제3호·제6호 및 제 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 천공기
- 6.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 11. 다짐기계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항목	가속주행 소	-음(dB(A))	배기소음	경적소음
자동	·차종류		<u></u> 가	나	(dB(A))	(dB(C))
경		가	74 이하	75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자동 차		나	76 이하	77 이하		
		소형	74 이하	75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승		중형	76 이하	77 이하		
용		중대형	77 이하	78 이하	100 이하	112 이하
자동 차	비취	원동기출력 195마력 이하	78 이하	78 이하	103 이하	
	대형	원동기출력 195마력 초과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소형		76 이하	77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1	중형		77 이하	78 이하		
화물		원동기출력 97.5마력 이하	77 이하	77 이하	103 이하	112 이하
자동 차	대형	원동기출력 97.5마력 초과 195마력 이하	78 이하	78 이하	103 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초과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6]	총배기량 175cc 초과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110 이하
륜 자동	총배기량 175cc 이하·80cc 초과		77 이하	77 이하		
차	き	-배기량 80cc 이하	75 이하	75 이하	102 이하	

- 비고: 1. 위 표 중 경자동차의 "가"의 규정은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에 대하여, 위 표 중 경자동차의 "나"의 규정은 그 밖의 자동차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 2. 위 표 중 가속주행소음의 "나"의 규정은 직접분사식(DI) 디젤 원동기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하고, 위 표 중 가속주행 소음의 "가"의 규정은 그 밖의 자동차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 3. 차량총중량 2톤 이상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오프로드(off-

road)형 승용자동차 중, 원동기 출력 195마력 미만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표의 가속주행소음기준에 1dB(A) 가산하여 적용하며, 원동기출력 195마력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표의 가속주행소음기준에 2dB(A) 가산하여 적용한다.

4. 가속주행소음 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측정방법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별표 11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자동차종	소음항목	배기소음(dB(A))	경적소음(dB(C))
경	자 동 차	100 이하	110 이하
	소형	100 이하	110 이하
승 용	중형	100 이하	110 이하
자동차	중대형	100 이하	112 이하
	대형	105 이하	112 이하
-1 1	소형	100 이하	110 이하
화 물 자동차	중형	100 이하	110 이하
71071	대형	105 이하	112 이하
০	륜 자 동 차	105 이하	110 이하

별표 13의3의 제목, 구분란의 제2호, 비고란의 제1호 및 제3호중 "운행차검사대행자"를 각각 "확인검사대행자"로 하고, 동 비고란의 제1호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으로 하며, 동 비고란의 제4호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3항"을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4 앞면중 "소음·진동규제법 제38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동표 뒷면 유의사항란의 제3호중 "소음·진동규제법 제59조제2호의3"을 "「소음·진동규제법」 제59조제 4호"로 한다.

별표 22의 제목 및 제1호중 "검사대행자"를 각각 "확인검사대행자"로 하고, 동표 제3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표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22의2 및 별표 22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3 제1호나목중 "2. 개별기준의 가. 및 마. 경우에는"을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23 제2호가목 위반사항란 및 행정처분기준란중 "환경관리인" 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하고, 동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생활소음 • 진동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ol મો <i>મ</i> ો સ્રો	근거	소음	ठॅ	y 정 처 분	기 준	
위 반 사 항	법령	원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23	법	공사	작업시간의	작업시간의	작업시간의	소 음
조제2항의	제26	장,	조정, 방음・	조정, 방음・	조정, 방음・	• 진
규정에 따른	조제	공장	방진시설의	방진시설의	방진시설의	동 발
생활소음 •	1항	ㆍ사	설치, 저소음	설치, 저소음	설치, 저소음	생 행
진동의 규제		업장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의	위 의
기준을 초과		에	사용 등의 명	사용 등의 명	사용 등의 명	중 지
한 때		한함	렁	경	령	명령
		확성	소리의 크기	소음 • 진동발		
		기에	조절 등의 명	생행위의 중		
		한함	령	지명령		
(2) 법 제26	법		규제대상 소	공사중지명령		
조제1항의	제26		음원의 사용			
규정에 따른	조제		금지명령			
작업시간조	2항					
정 등의 명						
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때						
(3) 법 제26	법		이동소음원의			
조의2의 규	제26		사용금지, 소			
정에 따른	조의		리의 크기조			
이동소음규	2제1		절, 사용시간			
제지역 안에	항		의 제한 등의			
서 이동소음			명령			
원을 사용한						
때						

비고:

1. (1)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명령"은 공사장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2. (1)의 행정처분기간 중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1)의 행정처분기준 중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이라 함은 공사장의 경우에는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공장·사업장의 경우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하며, 확성기의 경우에는 확성기 사용의 중지를 말한다.
- 3. (2)의 공사중지 명령의 대상은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공사에 한한다.
- 4. (2)의 위반사항을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별표 23 제2호사목의 제목 및 위반사항란의 (1) 내지 (5)중 "검사대행자"를 각각 "확인검사대행자"로 하고, 동목 근거법령란의 (1) 내지 (5)중 "법 제48조제1항"을 각각 "법 제48조의3"으로 한다. 별표 23 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소음도검사기관과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그기버러	행	정 처 분 기	준
기 반 가 엉	근거법령	1차	2차	3차
(1) 법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	법 제49조의3	지정취소		
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이	제5항제1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	법 제49조의3	경 고	경 고	지정취소
에 따른 소음도검사기관이	제5항제2호			

ઇો મી ≀ો ⊼ી.	그기비과	행 :	정 처 분 기	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1차	2차	3차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3) 법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	법 제49조의3	지정취소		
에 따른 소음도검사기관이	제5항제2호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4) 법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	법 제49조의3	경 고	경 고	지정취소
에 따른 소음도검사기관이	제5항제2호			
구비하여야 할 검사장 및				
시설・장비가 부족한 경우				
(5) 법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	법 제49조의3	지정취소		
에 따른 소음도검사기관이	제5항제2호			
구비하여야 할 검사장 및				
시설·장비가 전혀 없는 경				
宁				
(6) 법 제49조의3제4항의 규정	법 제49조의3	경 고	경 고	지정취소
에 따른 소음도검사기관 준	제5항제3호			
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	법 제49조의3	영업정지	영업정지	지정취소
에 따른 소음도검사기관이	제5항제4호	1월	3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음도검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중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을 각각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내지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7호서

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의 앞쪽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앞쪽중 "시·도지사"를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뒤쪽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의 뒤쪽,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별지 제14호서식의 뒤쪽, 별지 제18호서식의 뒤쪽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뒤쪽중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를 각각 "시·군·구(소음·진동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앞쪽중 "동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뒷면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뒷면중 "환경부(교통공해과)·국립환경연구원(자동차공해연구소)"를 "환경부(교통환경기획과)·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로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앞면중 "소음·진동규제법 제3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을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환경부(교통공해과)·국립환경연구원(자동차공해연구소)"를 "환경부(교통환경관리과)·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앞면중 "운행차 검사대행업체명"을 "확인검사대

행업체명"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뒷면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운행차검사대행자"를 각각 "확인검사대행자"로, "소음·진동 규제법 제59조제2호의3"을 각각 "「소음·진동규제법」 제59조제4호"로, "50만원 이하의"를 "100만원 이하의"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내지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앞쪽중 "운행차검사대행자"를 각각 "확인검사대행자"로 하고,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뒤쪽중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를 각각 "시·군·구(확인검사대행자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내지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제1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1호 단서 및 동항제2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로 하며, 동항제3호중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의2제1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하며, 동조

제3호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동조제4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54조제3호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한다.

제54조의2 본문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54조의3제2항 및 제54조의4제2항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제58조의2제1호 및 동조제2호중 "항공법시행규칙"을 각각 "「항공법시행규칙」"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2호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제87조의2제2항제1호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4호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한다.

제92조 본문중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2 내지 제79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2 제1호가목 비고란의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 공사를 개시하는 공사장부터 적용한다.
-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의2]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제4조의2 관련)

- 1. 굴삭기(정격출력 19kW 이상 500kW 미만의 것에 한한다)
- 2. 다짐기계
- 3. 로우더(정격출력 19kW 이상 500kW 미만의 것에 한한다)
- 4. 발전기(정격출력 400kW 미만의 실외용에 한한다)
- 5.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 6.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에 한한다)
- 7. 콘크리트절단기
- 8. 천공기
- 9. 항타 및 항발기

[별표 4]

<u>공장소음 · 진동 배출허용기준(제6</u>조 관련)

1. 소음 : 대상소음도에서 다음 표에 따라 보정한 평가소음도가 50dB(A) 이하일 것.

보 정 표					
항 목	내 용	보정치			
충 격 음	충격음 성분이 있는 경우	+5			
관련시간대에	50% 이상	0			
대한	25% 이상, 50% 미만	-5			
측정소음발생	12.5% 이상, 25% 미만	-10			
시간의 백분율	12.5% 미만	-15			
	(낮) 06:00~18:00	0			
시 간 별	(저녁) 18:00~24:00	+5			
	(밤) 24:00~익일 06:00	+10			
지 역 별	가.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녹지지역 (2)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4)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나.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 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다.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바.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	0			

- 비고: 1. 관련시간대는 낮은 8시간, 저녁은 4시간, 밤은 2시간으로 한다.
 - 2. 지역별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3. 위 표의 지역별 기준 중 마목 및 바목의 규정은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진동 : 대상 진동레벨에서 다음 표에 따라 보정한 평가진동레벨이 60dB(A)이하일 것.

보 정 표				
항 목	내 용	보정치		
관련시간대에 대한 측정진동발생 시간의 백분율	50% 이상 25% 이상, 50% 미만 25% 미만	0 -5 -10		
시 간 별	(낮) 06:00~22:00 (밤) 22:00~06:00	0 +5		
지 역 별	가.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녹지지역 (2)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4)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나.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다.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나목 및 다목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	0 -5 -10 -15 0 -10 -5		
	른 산업단지 바.「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초·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	0		

비고 : 1. 관련시간대는 낮은 8시간, 밤은 3시간으로 한다.

- 2. 지역별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3. 위 표의 지역별 기준 중 마목 및 바목의 규정은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8의2]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제33조제5항 관련)

- 1.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dB 이상 되어 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한다.
- 2.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음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방음벽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 3.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
- 4. 방음벽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음의 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비고. 가. 삽입손실 측정을 위한 측정지점(음원위치, 수음자위치)은 음원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노면 위 1.2m 지점으로 하고, 방음벽시설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동일한 음량과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위치(refrence position)의 측정은 생략할 수 있다.
 - 나.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의 삽입손실 측정은 "음향-옥외방음병의 삽입손실측정방법"(KS A ISO 10847) 중 간접법에 따른다.

소음도표지(제79조의6 관련)



- 크기 : 80mm × 80mm(기계의 크기 및 부착위치에 따라 조정합니다)
- 색상 : 회색판에 검은 색 문자를 씁니다.
- 재질 : 쉽게 훼손되지 아니하는 금속성 또는 유사한 강도 의 재질이어야 합니다.
- 부착방법 : 기계별로 눈에 잘 띄고 작업으로 인한 훼손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합니다.

[별표 22의3]

소음도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79조의9 관련)

- 1. 소음도검사는 직접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기술직 1인 이상을 참여시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소음도검사신청자가 현장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사장 및 시설·장비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현장검사를 할 수 있다.
- 2. 소음도검사기계·장비는「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14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기계·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3. 제79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검사방법에 따라 소음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4. 소음도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가. 소음도검사 신청서류
 - 나. 소음도검사기록부
 - 다. 소음도검사 관련서류

[별지 제21호의3 서식]

인증 <i>^</i> 제	생략번호 호		자동차소음인증생략서			
신 청	① 성명(1	대표자)		②주민등록 번호		
인	③ 주	소			(전화 :)
	자동차	명칭		제작사		
4	자동차	형식		엔진형식		
자 동	배기량			최대출력		
차	차종/사	용연료		변속기		
제 원	공차중	량		총중량		
	제원관i (형식승	리번호 ·인번호)		차대번호		

「소음・진동규제법」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생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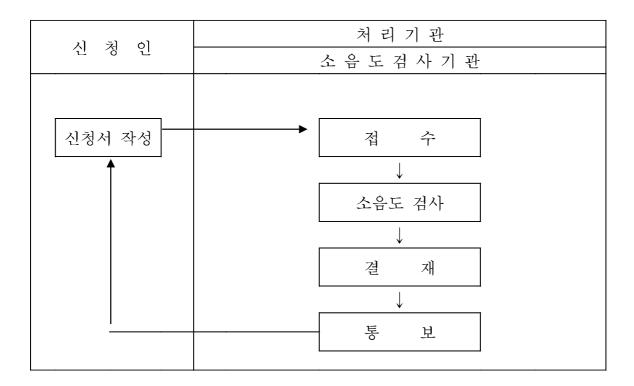
년 월 일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 인

		소음도검	사 신 청 서		처리기간	
		Γ			20일	
신	①상 호					
청	②대 표 자		③주민등록	번호		
인 ④주 소 (전화번호)						
⑤사	업장주소		(전화번호)		
	⑥제 작 사		⑦제작(수입)국가			
신	⑧기계명칭		⑨최대출력			
청 내 용	⑩상품명칭 및 모델번호					
6	① 용 도		⑫생산(수입) 계획량(대수)			
위		7제법」제49조의2 한 소음도검사를 신	및 동법 시행규칙 <u>]</u> 청합니다.	제79조의2의 규	정에 따라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5	E는 지장)	
소음도검사기관의 장 귀하						
	3 H 7) =				수 수 료	
	○ 첨부서류 1.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1부					
	세천당세에 본 소음저감에 핀					

작성요령

- 1. ⑪란은 기계가 주로 사용되는 용도를 간략히 기재합니다.
- 2. 첨부서류 중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에는 기계의 규격, 용량, 구조, 재질, 원리, 성능, 특징 및 용도 등을 알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제품사진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40호서식]

Ę	<u>호</u>	人 ㅇ ㄷ 궈 刈 쳐 져 괴
Z	회 호	소음도검사성적서
1) 상 호	
	② 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4) 주 소	(전화번호)
	5)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⑥ 제 작 사	⑦ 제 작 국
인	⑧ 기계명칭	⑨ 최대출력
정 내 용	⑩ 상품명칭 및 모델번호	① 음향파워레벨 (L _{wA}) dB
	① 용 도	

① 비고

※ 소음도표지의 내용 및 부착방법 등 소음도 표지부착에 필요한 사항

「소음·진동규제법」제4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기계에 대한 소음도검사결과를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소음도검사기관의 장 (인)

소음도검사기록부

검사자 : (서명 또는 인)

1) 개요

	대 상 기 계	측 정 상 황			
기계명칭		시 험 일 자	년 월 일		
상 품 명 칭		시 험 장 소			
및 모델번호		날 씨			
제조회사		온 도	${\mathbb C}$		
부 속 품		풍향 / 풍속	m/s		
정격출력		지 표 면			
ps/r.p.m.		상 태			
기계의	가로 m×세로 m×	배경소음	dB(A)		
크 기	높이 m=부피 m³	間 多五百	$\operatorname{dD}(A)$		

2) 측정기기

측정기기	명 칭	형 식	제조회사	정도검사 년 월 일
마이크로폰				
1~6				
녹음기 또는				
주파수분석기				
표준음발생기				
기준음원				
그 밖의 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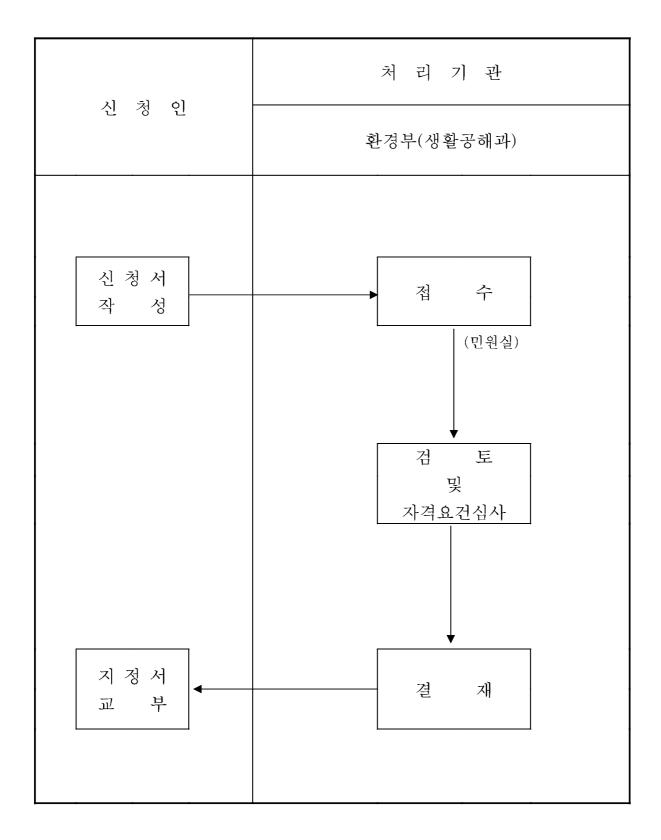
3) 측정결과

측정반경			측정면적		K_1		K_2	
측정위치		측정회수						
		1회 등가소음도 dB(A)		B(A)	2회 등가소음도 dB(A)		3회 등가소음도 dB(A)	
1								
2								
3								
4								
5								
6								
평균값	ţ							
음향파워 [;] (dB)	레벨							
결과 (L _{wA})								

					처리기간
소음도검사기관지정신청서					15일
신	①성 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청	③기관명				
인	④기관 소재지		(전호	화 :)
⑤ 검	사장 소재지		(전호	화 :)
「소음·진동규제법」제4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음도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없음
2.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장,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지정번호 제 호	소음도검사기관지정서					
①성 명(대표	자) ②주민등록번호					
③기관명						
④기관 소재지 (검사장 소재지	(전화:)					
⑤등 록 조 건						
	「소음·진동규제법」제4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 변경사항 >

일 자	내 용	확	인

< 처분사항 >

일	자	나	1	용	확	인